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4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이해민 · 황운하
김동아 · 염태영 · 김영진
이광희 · 박정현 · 신장식
백승아 · 이기현 · 서왕진
김선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,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.

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‘재범의 위험성’ 및 ‘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’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70조 및 제201조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죄의 중대성, 재범의 위험성,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”을 “범죄의 중대성 등을”로 한다.

4.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

5. 피고인이 피해자·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

제201조제1항 본문 중 “各 號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70條(拘束의 事由) ①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<u>범죄의 중대성, 재범의 위험성,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 략) 第201條(拘束) ①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 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	第70條(拘束의 事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</u> <u>5. 피고인이 피해자 · 중요 참고인 또는 그 친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</u> ② ----- -----<u>범죄의 중대성 등을</u>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第201條(拘束) ① ----- ----- -----<u>각</u> <u>호의 어느 하나에</u>----- ----- -----

